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 촉구결의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5월 13일 박노설의원의외 18인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년 5월 13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03년5월14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노설 의원)

□ 주 문

- 2003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천시장이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협약한 「지하철7호선연장구간건설협약」은 부천시에 과중한 재정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협약이므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을 광역전철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제안이유

-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은 서울 온수역과 인천 부평역간의 9.8km로 2개 이상의 시·도(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운행되는 전철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특별법에 의거 광역전철사업으로 추진되어함.
- 그러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천시장이 체결한 「지하철7호선 연장구간건설협약」과 건설교통부의 고시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어, 구간이 가장 긴 부천시가 과중한 공사비 부담은 물론 건설 후의 운영비용까지 떠 안게 됨에 따라 부천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 「지하철7호선연장구간건설협약」은 부천시 구역에 철도차량기지를 유치하는데 협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환경이 가장 열악한 부천시에 철도차량기지를 설치하려 하고 있음.
- 따라서 부천시의회 의원은 81만 부천시민의 대변자로서 불합리하게 체결된 「지하철7호선연장구간건설협약」내용을 변경하고, 지하철7호선연장구간

을 광역전철로 추진할 것을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에 촉구하고자 함.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

8. 결의문(안)

○ 붙 임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 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문(안)

부천시의회 의원은 2003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부천시장 등 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체결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건설 협약서”에 대하여 연장계획구간인 서울 운수역 ↔ 인천 부평구청역 간 9.8km 구간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규정에 의거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전철로서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철도이므로 건설교통부는 광역전철로 고시하였어야 함에도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됨으로 인하여, 부천시의 재정부담은 물론 건설 후 운영비용까지 떠 안게 되는 등 불합리한 협약 체결이므로 빠른 시일 내 협약내용을 변경하고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광역전철로 변경 고시하여 사업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 운수역에서 부천 구간을 통과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역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반드시 도시철도 사업이 아닌 광역전철로 추진함이 타당하므로 즉시 광역철도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기 건설된 서울지하철 연장사업인 분당선, 일산선, 과천선, 성남선, 안산선 등은 사업 주체가 철도청으로서 소요건설비는, 개발부담금 또는 전액 국고 보조로 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만이 도시철도 사업으로 추진되어 재정형편이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에서 약 4,000억원에 이르는 건설비와 적자가 예상되는 운영비까지 부담토록 한다는 것은 그러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부천시 재정의 고갈, 파산까지도 염려가 되는 지극히 부당한 처사로서 즉시 시정되어 광역철도 건설로 변경 추진되어야 한다.

3. 금번 추진되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1990년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인천 지하철 3호선 1단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재원조달 곤란으로 1998년도에 일시 중단된 사업으로서 인천지하철 3호선 1단계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추진될 경우 인천지하철 3호선 2, 3 단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는 등 최대의 수혜지역은 인천광역시가 되며, 지난 3월 11일자 협약서상의 단순거리에 의한 지하철 7호선 건설비 분담금 배정은 지극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인천광역시에서 건설비의 대부분을 분담토록 즉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인천도시철도가 추가 건설될 경우 부천시 구역 내에 차량기지를 유치키로 한다는 조항은 부천시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항으로 협약서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2003년 5월 13일

부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 촉구결의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136호
의결 년월일	2003. 5. 15 (제104회)

제안년월일 : 2003년 5월 15일

제출자 : 부천시의회의원
서영석 등 18인

1. 주 문

2003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부천시장이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협약한 『지하철7호선연장구간건설협약』은 부천시에 과중한 재정부담을 주는 협약이므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을 광역전철에 해당하는 국도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은 서울 온수역과 인천 부평역간의 9.8km로 2개 이상의 시·도(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운행되는 전철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광역전철에 해당하는 국고지원으로 추진되어함.
- 그러나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부천시장이 체결한 『지하철7호선연장구간건설협약』과 건설교통부의 고시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구간이 가장 긴 부천시가 과중한 공사비 부담은 물론 건설 후의 운영비용까지 떠안게 됨에 따라 부천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
- 기 건설된 서울지하철 연장사업인 분당선, 일산선 등은 사업주체가 철도청으로서 소요건설비는 개발부담금 또는 전액 국고보조로 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사업만이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재정형편이 열악한 부천시에서 약 4,000억에 이르는 건설비와 적자가 예상되는 운영비 부담은 부천시의 재정고갈 또는 파산까지도 염려되는 처사로서 즉시 광역철도 건설에 해당하는 재원지원을 강력히 촉구함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의광역철도건설에 해당하는재정지원촉구결의문

부천시의회 의원은 2003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부천시장 등 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체결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건설 협약서"에 대하여 연장계획구간인 서울 온수역 ↔ 인천 부평구청역 간 9.8km 구간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규정에 의거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전철로서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철도이므로 건설교통부가 광역전철로 고시하고 추진했어야 하나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되어 부천시의 재정부담은 물론 건설 후 운영비용까지 떠 안게 되는 협약체결이므로 부천시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광역전철에 해당하는 국·도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 온수역에서 부천 구간을 통과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역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반드시 도시철도 사업이 아닌 광역전철로 추진함이 타당하므로 광역철도사업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부천시에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기 건설된 서울지하철 연장사업인 분당선, 일산선, 과천선, 성남선, 안산선 등은 사업 주체가 철도청으로서 소요건설비는 개발부담금 또는 전액 국고보조로 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만이 도시철도 사업으로 추진되어 재정형편이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에서 약 4,000억원에 이르는 건설비와 적자가 예상되는 운영비까지 부담토록 한다는 것은 그러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부천시 재정의 고갈, 파산까지도 염려가 되는 처사로서 즉시 광역철도 건설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3. 금번 추진되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1990년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인천지하철 3호선 1단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재원조달 곤란으로 1998년도에 일시 중단된 사업으로서 인천지하철 3호선 1단계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추진될 경우 인천지하철 3호선 2, 3단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는 등 최대의 수혜지역은 인천광역시가 되며, 지난 3월 11일자 협약서상의 단순거리에 의한 지하철 7호선 건설비 분담금 배정은 지극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에 공사비 부담률을 상향조정토록 하며, 또한 부천시 구역 내 철도차량기지 유치를 위한 협조사항은 부천시의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협약인 관계로 부천시민의 숙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부천시 재정의 고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장기적 재정확보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5월 15일

부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